

재제조 연구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치 및 명칭)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며, 그 명칭은 재제조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녹색 성장 사업인 재제조 기술의 일류화, 선진화 촉진을 위하여 자원 순환 관련 기초 및 응용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를 기업체에 이전함으로써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도화를 이루며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 및 산업인력을 육성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제조기술의 세계일류화를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2. 지식경제부 지정 충남자동차부품 사업 지원 사업의 수행
3. 지역산업체 현장애로 기술 해결
4. 산업우수 전문인력의 육성과 보급
5.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의 개발
6. 산업체 기술인력의 수탁교육
7. 연구문헌, 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각종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움 개최
9. 연구결과 모음집 발간
10. 국제기술협력
11. 기타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직제) ①센터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센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센터에는 연구기획실, 산학협력실, 행정실, 홍보실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④센터에는 전임연구원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소장 및 부소장) ①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장한다.

②부소장은 소장의 유고시 또는 위임을 받아 소장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소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원과제의 수행 시, 과제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과제 종료 시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직제) 센터의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분소, 지부, 부설기관 및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및 협의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회의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위임장을 통해 심의 권리를 소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8조(산학협력협의회) ①지역산업체의 현장애로기술을 도출하여 센터의 사업에 반영하고 센터의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협의회 회원은 센터의 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대표들로서 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장 운영 및 재정

제9조(연구발표) ①센터는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소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권위 인사에게도 연구결과 발표회에 참석케 하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세미나 등 개최) 센터는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및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①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찬조·보조금 및 연구수탁금, 교비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은 본교(산학협력단) 및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의 교비지원의 범위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비 용 및 공용 기기의 구입비 등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센터에 전임연구원, 직원 및 조교를 지원할 수 있다.

③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산학협력단)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해산 후 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3조(보고) 소장은 예결산, 주요사업계획 등 센터의 교내관련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기관 등의 제반규정에 따

른다.

부칙<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